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 매립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부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73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74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75호)
- ※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6
2. 개정안 검토	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8
(2) 개정안 검토	16

I . 제안경위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안)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의원안)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75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의원안)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¹⁾ 부과되는 목적세로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지역자원시설세는 ① 특정자원분, ② 특정시설분, ③ 소방분으로 구분되며, ① 특정자원분은 다시 i) 발전용수분, ii) 지하수분, iii) 지하자원분으로, ② 특정시설분은 iv) 컨테이너분 v) 원자력발전분, vi) 화력발전분으로 구분됨.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지하수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이 중 ① 특정자원분 및 ② 특정시설분은 1992년 지역개발세(발전
용수분·지하수분·지하자원분·컨테이너분)로 신설된 후 2005년 원자력
발전분, 2011년 화력발전분이 추가되었고, ③ 소방분은 1961년 공동
시설세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지역자원
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개정안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폐기물매립시설(과세대상)에 대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납세지)에게 매립량 톤당 6천원(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납세하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며(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등),

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2조(과세대상) ²⁾ ① (생략)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 다.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u> 3.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³⁾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43조(납세의무자)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u> 3. (현행과 같음)

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4조(납세지) ⁴⁾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생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44조(납세지)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u> 3.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⁵⁾ ① (생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u>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4)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5)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때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제1항제1호제10호사목 신설),

현행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6)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 바. (생략) <u><신설></u> 사. (생략)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 아. (현행 사목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6) 「지방세기본법」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 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세액의 65%를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현행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7)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 ----- ----- ----- ----- ----- ----- ----- -----.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 --- <u>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u>화력발전·원자력발전</u>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③ ----- <u>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u> ----- ----- ----- ----- ----- ----- -----.
1. <u>화력발전·원자력발전</u>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	1. <u>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u> ----- ----- -----

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 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 2. 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8)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개정안 검토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정적 외부효과(특정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이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보전(외부효과의 내부화)하는 기능을 가짐.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⁹⁾의 유해성을 전제로 그에 대한 배출최소화원칙·오염자부담원칙을 명시¹⁰⁾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매립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¹¹⁾의 설치기관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의무를 부과¹²⁾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현행법 체계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0)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기준 폐기물은 총 1억 8,645만톤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재활용된 1억 6,188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의 38.4%(944만톤)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폐기물 매립은 상당 규모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폐기물의 연도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

(단위: 만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량	15,678	16,283	18,149	19,546	19,738	18,645
처리 방법	매립	1,297	1,265	1,114	1,002	944
	소각	960	964	948	1,015	977
	재활용	13,383	14,025	15,708	17,076	16,188
	기타	39	30	379	453	537

주) 기타: 중화·과쇄·고형화 및 해역배출

자료: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폐기물통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부(20% 이내에서 설치기관이 결정)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어 다음 표와 같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¹³⁾¹⁴⁾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유형(「시행령 별표3」)]

사업 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시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폐기물 매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경우 매립 비용이 상승하여 국민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14)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23년 136억 8,700만원이 조성·집행되었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매립지 공모가 2,500~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제시하며 2021~2024년간 3차례 실시되었으나 응모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제도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① 특별시·광역시·도세¹⁵⁾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귀속되고, 개정안에 따를 때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액의 65%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며, 사용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¹⁶⁾ 피해 보전 수단으로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측면이 있고,

15)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 16)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들도 과세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보전에만 사용되지는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군 조례상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에는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원자력발전과 관련이 적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에 지원되는 배분금액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5. 전기요금 보조사업

② 폐기물매립시설과 인접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액이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매립시설 2킬로미터 이내로 설정되는 주변영향지역¹⁷⁾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보전 수단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